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 발간하는 "소비자법연구"의 발행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편집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한다.

제3조(편집위원장 및 위원)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편집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편집위원회의 직무)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"소비자법연구"의 편집 및 출판

2. "소비자법연구" 원고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

3. "소비자법연구" 편집위원회 규정 및 발행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⋅개정

4. 그 밖에 "소비자법연구"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운영)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편집위원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, 최연장자인 편집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